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- 28호

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구매연계)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

『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』 구매연계 상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0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유의사항 -

1. 세부과제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내역사업	내내역사업	세부과제	공고	신청·접수	선정평가	협약
시장확대형	전략형	구매연계(시행)	'25.1월	2월 5일 ~ 2월 20일	3월	4월
		구매연계, 상생협력(예정)	5 ~ 6월	6월 예정	6 ~ 8월 예정	9월 예정

※ 하반기 지원과제, 지원규모 및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세부 내용은 공고 참조

2. 신청자격 서류,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(수정)제출이 불가하오니,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(18시) 내 신청·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본 사업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.go.kr)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1. 사업 소개

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(공급) 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* 내역사업(세부과제)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[붙임2]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

2. `25년 변경사항

구 분		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	
		'24년도	'25년도
가점		-	• 多수요처과제 1점 신설
기타 사항	동시수행 과제수 제한	• 해당없음	•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1개로 제한 * 단,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 기준은 반드시 [붙임1-1] 참조
	보안등급 분류	• 해당사항 없음	•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여부를 자체 점검 후 신청(필수) * 세부내용은 [붙임1-1, 1-2] 참조

3. `25년 지원내용

□ (사업목적)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-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&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

□ (지원규모) 28억원 내외 (13개 과제 내외)

세부 지원분야		지원규모	지원내용	지원일정
구매연계	국내수요처	13개 과제 내외	**국내수요처**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	공고(1월) → 접수(2월) → 선정평가(3월) → 협약(4월)

※ [참고]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·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신청·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

□ (지원조건)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
내역 사업	개발기간 및 지원한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	지원방식
시장확대형 (구매연계)	최대 2년, 6억 이내 (연차별 최대 3억 이내)	75% 이내	자유공모 (품목지정 포함)

*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기관(중소기업) 총 연구개발비의 25%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%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4. 신청자격 등

□ **(공통자격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
□ **내역사업(세부과제)별 지원자격 및 분야**

※ 내역사업(세부과제)별 지원대상 및 조건, 지원분야(품목)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

내역사업	지원자격 및 분야	참고문서
시장확대형 (구매연계)	○ **구매연계** - (지원자격) 수요처의 '구매동의서' 또는 '구매계약서'를 받은 중소기업 * 매출액 기준(20억 이상) 미적용 **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- (지원분야) 국내수요처의 수요 기반 기술개발 지원	붙임2 참고

□ **(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)**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
* 신청자격 검토(확인) 결과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
○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·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,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□ **(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)** 신청·지원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1-1] 참고

□ **(3책5공 제도 적용)**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

○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,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*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

*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,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)

* 다만,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

□ **(보안등급 분류)**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

○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
- 보안과제는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
-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,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(보안과제 ↔ 일반과제)

○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제21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제44조부터 제48조,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」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

*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

○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[붙임1-1, 1-2] 참고

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연구개발계획서 신청·접수기간

☞ 접수창구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→사업정보→사업공지→사업공고

○ **공고기간 : 2025년 1월 20일(월) ~ 2월 20일(목)**

○ **신청·접수기간 : 2025년 2월 5일(수) ~ 2월 20일(목), 18:00까지**

<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☞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
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

*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

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·접수에 유의하기 바람

* **18시 이후, 신청 및 제출,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**

☞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 까지만 가능

□ **(신청방법 및 구비서류)** 세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[붙임2] 참조

6.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

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☞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
*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,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
** 선정평가(서면·대면 등)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
***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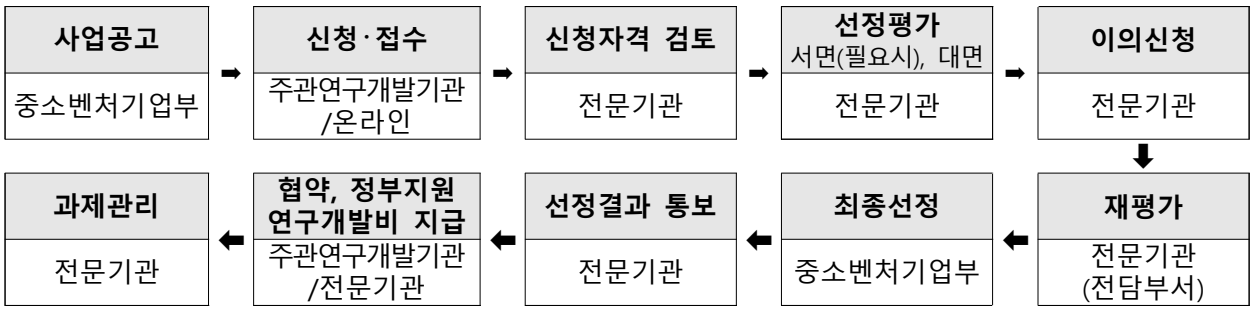

7. 기술료 징수기준

□ R&D 기술료 징수기준

○ **(납부대상)** 최종평가 "완료"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
○ **(납부방식)**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 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
☞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* 시스템사용 : www.iris.go.kr >>알림고객>>자료실>>IRIS사용메뉴얼>>온라인메뉴얼>>"기술료" 검색>>R&D업무포털 "사후관리(기술료)메뉴얼" 참고
* 법령확인: www.iris.go.kr >>알림고객>>자료실>>국가R&D법령.지침>>"중소벤처기업부", "기술료" 검색>> "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" 참고

8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
○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
○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
○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(구매연계, 상생협력) 관리지침

○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
○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

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□ 추진체계

< 사업추진 체계도 >

< 구매연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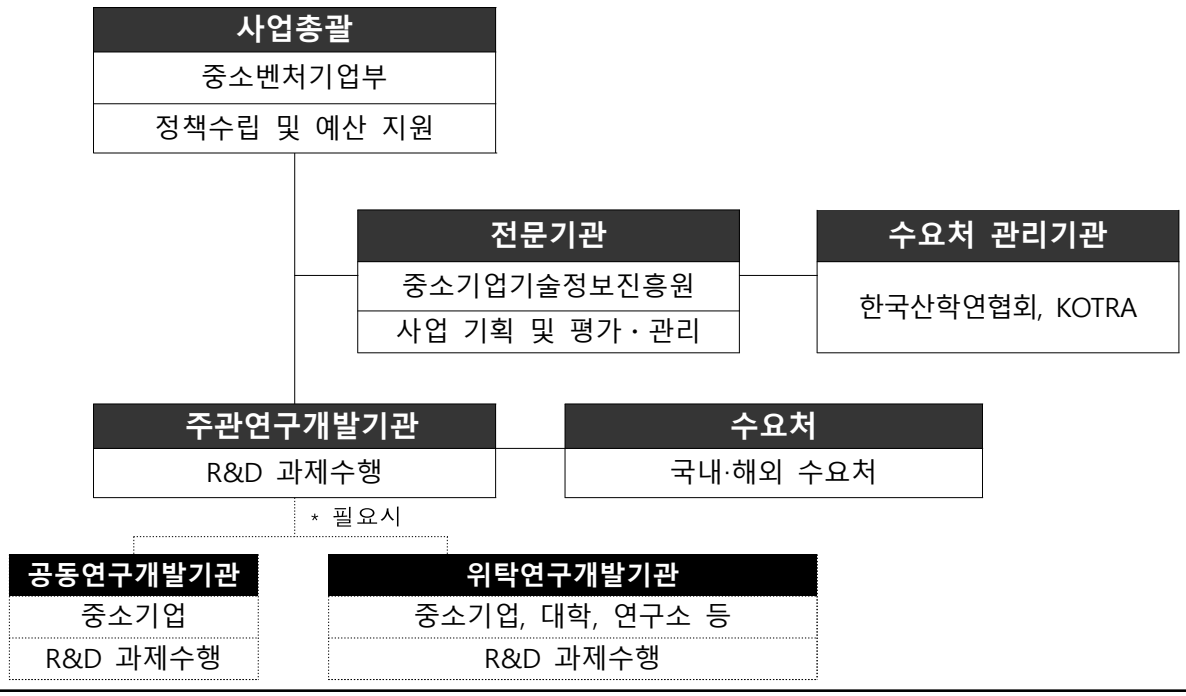

* 대학,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

9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	시행계획 공고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전략협력사업실)	신청・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선정평가, 유의사항 등	
시스템	IRIS 운영단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신청・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	1877-2041

☞ 관련 웹사이트
- ○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http://www.mss.go.kr
- ○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: http://www.iris.go.kr
- ○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IIfqd

[붙임1-1]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
[붙임1-2]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보안대책
[붙임2] 내역사업(세부과제)별 세부 지원내용
[붙임3] 내역사업(세부과제)별 제출서류 양식